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2398

제출년월일 : 2021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1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사업 편성(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 부지매입)을 위해 비융자성 사업비를 3,600백만원 증액하여 당초 대비 20% 초과 변경하고 예치금을 3,600백만원 감액하여

나. 지출계획 비융자성 사업비를 9,367백만원, 예치금을 24,024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

다. 지출계획 변경내용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A)	1차 변경	2차 변경	3차 변경(B)	증 감(B-A) (증감률)
계	32,572	32,572	33,401	33,401	829
비융자성사업비	5,469	5,549	5,767	9,367	3,898(71.3%)
기 금 관 리 비	10	10	10	10	-
예 치 금	27,093	27,013	27,624	24,024	△3,069(11.3%)

- 1차변경 : 우당이회영기념관 조성 80백만원 편성(예치금 80백만원 감액)
- 2차변경 :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증가액 지출계획에 반영
  - ▸ 비융자성 사업비 218백만원 증액 : 집수리 코디네이터 사업 편성
  - ▸ 예치금 611백만원 증액
- 3차변경 :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 부지 매입비 3,600백만원 편성(예치금 3,600백만원 감액)

※ 비융자성사업비 당초 계획대비 20% 초과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재생정책과 재생정책팀 김주헌 (☎2133-8615)